

# 예산총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7,780,028	12,833,401
일반회계	409,103,661	12,273,110
특별회계	18,676,367	560,291
기타특별회계	18,676,367	560,291
상수도	14,589,964	437,699
의료급여기금	1,807,756	54,233
주민소득지원기금	55,468	1,664
기반조성사업	8,692	261
주택사업	166,606	4,998
묘포장	56,389	1,692
회원산업단지조성지원	547,750	16,433
공유임야관리	163,290	4,899
기초생활보장기금	959,502	28,785
회원관광단지조성사업지원	320,950	9,62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